

서울중앙지방법원 2021. 12. 10 선고 2021가단5003512 판결 [사해행위취소]

전 문

원 고 경기신용보증재단

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길도

담당변호사 조홍래

피 고 1. A

2. B

변 론 종 결 2021. 11. 26.

판 결 선 고 2021. 12. 10.

주 문

1. 피고 A은 원고에게 16,261,593원과 그 중 15,890,476원에 대하여 2020. 6. 18. 부터 2021. 4. 3.까지는 연 10%의,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%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2. 피고 A과 피고 B 사이에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20. 1. 17. 체결된 매매계약을 16,291,593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.
3. 피고 B은 원고에게 16,291,593원과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%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4.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.
5.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.

N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청구의 표시 :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.

2. 근 거

가. 피고 1 :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(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)나. 피고 2 : 자백간주
판결(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)

판사 김미리

별지